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1392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 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3년 11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국토교통부 장관 권한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법률 제19671호, 2023. 8. 16. 공포·시행)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 중인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를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기관인 지방 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관련 서식을 개정하고(안 제16조제10항), 이축대지의 이력관리 등을 위해 개발제한 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서식을 일부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 지방국토관리청 위임에 따른 신청서류 서식 개정 등(안 제16조 및 별지 제3호, 제4호)

- 1)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수 업무와 관련된 신청서류 제출처 및 관련 서식 변경
- 나. 이축대지 이력관리 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 서식개정(안 별지 제2호)
  - 1)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이축 또는 훼손지정비사업 관련 사항도 함께 기재토록 서식 작성요령에 관련 내용 추가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00월 00일 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6-2동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

ㅇ 팩스: 044-201-5574

##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044-201-3745, 37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